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.

2. 계약기간

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하며,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3. 급여제공시간

-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

요일	시간	비고
월~토	08:00~18:00	공휴일 제공,일요일 휴무

4.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(2025.01.01. 시행)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연차원
급여	3~6시간 미만	40,650	37,630	34,740	33,160	31,580	31,580
	6~8시간 미만	54,490	50,470	46,590	45,000	43,400	43,400
	8~10시간 미만	67,770	62,780	57,960	56,380	54,780	54,780
	10~12시간 미만	74,660	69,160	63,900	62,990	60,710	
	12시간 이상	80,060	74,170	68,520	66,930	65,350	
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(원)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 6%

○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비급여 항목	비용
식비(1식)	3,000
간식비(2회/일)	1,000

단, 특별식을 제공받아 식재료비가 1식 3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실비

- 어르신의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
-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이용어르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비용
- 이용자(보호자)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비용 (특별영양식, 특별간호용품, 특별실이용 등)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①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을 안내 받을 권리가 있다.
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⑤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수급자에 관한 병력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6. 계약의 해제

① 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
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센터내에서 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④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⑤ 본인부담금 등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때
⑦ 센터 운영규정이나 이용계약서에 의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
⑧ 건물,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
⑨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
⑩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